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185호)

심사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18. 고성군수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액 : 1,301,787천원
- 조성방법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기금의 용도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정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4.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군수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장기예치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된 이자(당해연도 사용 기금액)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말 현재 기준 기금 조성액이 9억 4천 1백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상 수입이 171억원, 지출은 80억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91억원이 증액된 10억 3천 2백만원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은 1억 4천 44만 1천원으로 최저 적립금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기금운용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출연금을 보면 다른 해에는 1억 3천만원 내지 1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4억 8,156만원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 :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 :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 답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설치라든지, 안전장비 확보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12.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